
『남해 독일마을 팝업 홍보관 운영(긴급)』 용역
과 업 지 시 서

2024. 8.



(미래콘텐츠사업팀)

남해 독일마을 팝업홍보관 운영(긴급) 과업지시서

■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- 코엑스, 벅스코 관광박람회 참가 등 일방향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오롯이 남해독일마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홍보관 운영
- 10월 초에 열릴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체험형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

■ 과업의 개요

- 운영장소: 경상남도 김해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야외행사장
-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70일간
- 홍보관 운영기간: 2024. 9. 20.(금) ~ 29.(일) 예정
- 내용적 범위
 - 팝업홍보관 장소 임대 (대관료: 전체용역비의 15% 수준)
 - 오프라인 홍보관 기획 및 디자인 (전시, 스토어, 이벤트존 등)
 - 팝업홍보관 프로그램 기획 및 내외부 공간 연출 및 설치
 - 독일마을 맥주축제 콘셉트의 목공부스 기획, 제작, 설치, 철거 일체
 - 홍보관 내부 소규모 이벤트 기획 및 운영
 - 독일마을 맥주축제 콘셉트의 팝업 홍보관, 포토존 운영
 - 홍보관 내부 독일마을 홍보용 리플렛, 쿠폰 제작 및 배포
- ※ 이외 필요사항은 경쟁적 대화 및 제안을 통해 변경 가능

■ 과업의 세부내용

- 오롯이 경험하는 남해 독일마을
 - 남해 독일마을 홍보에만 집중된 독일마을 관광 홍보관 운영
 - 독일마을 조성 및 파독 광부·간호사의 남해 정착스토리, 현재 독일마을에서 운영되고있는 축제, 마을호텔 사업 등 소개 및 홍보
 - 교통편이 어려운 ‘남해 독일마을에 쉽게 오는 방법’ 등의 이색 관광 컨설팅 및 독일마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(여행컨설턴트 섭외/매치 필요)

○ 팝업에서 만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

- 전문MC 섭외 통한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맥주 빨리마시기 대회, 맥주잔 많이 들고 달리기 대회 등 소규모 이벤트 추진 (경품포함)
- 아울렛 야외 행사장에서 나매기 찾기 이벤트 등 이색 축제 이벤트 운영
※재단 공식 캐릭터(나매기) 인형탈 재단 제공 → 인형탈 인력운영 필요
- 독일마을 축제 때 판매하는 소시지, 맥주 등 소규모 식음공간 운영



○ 팝업홍보관 연출, 운영

- 독일마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가랜드, 플라워 연출 통한 소규모 목공 부스 기획, 제작, 설치, 철거 일체
- 팝업홍보관 내 독일마을 포토존 공간 조성 통한 SNS 이벤트 등 추진
- 홍보부스 내 영상 및 음향, 전기 등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 일체
- 관광객 응대, 제품 판매관리 등 홍보관 인력 운영 (10일)
※ 홍보관 콘셉트 기획 예시



○ 기타 프로그램 (용역비 포함 제안 요망)

- 인스타그램머블한 팝업홍보관 연출 통해 실질적 남해군 방문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벤트 기획·운영
- 기타 홍보관 내부에서 진행할 이색 프로그램 제안 (2건 이상)

○ 홍보관 활용 각종 홍보물 제작

- 방문 관광객 대상 배포할 독일마을 및 맥주축제 홍보물제작
- 맥주축제 방문을 제고를 위하여 축제장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이색 이벤트를 통해 경품 쿠폰 제작, 발행, 운영
- 독일마을 BI, 독일마을 이야기지도 등을 활용한 리플렛 제작 배포 등

○ 팝업 홍보관 홍보마케팅

- 이색 SNS 이벤트, 숏츠 등 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진행
- 팝업홍보관 운영을 통해 독일마을의 화제성을 높이고 SNS 기반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파급력 있는 독일마을 홍보 기여
→ 인플루언서, 블로그 체험단 운영 포함

■ 기타

- 단기간 내 추진되는 팝업홍보관 운영을 위해 필요 시마다 실시간 회의 진행 (다음날 오전까지 회의록 공유)
-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 간 추진
- 팝업 홍보관 오픈 10일 전까지 최종 행사 운영매뉴얼 전달 (PPT 형식)

■ 과업의 수행단계

○ 착수보고

- 용역세부추진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, 최종 결과보고서는 과업 종료일 10일 이내까지 제출해야하여 용역세부추진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법, 절차, 분야별 과업책임자, 과업수행담당업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.
-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세부 과업수행계획이 담긴 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.

○ 최종보고

-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에 대한 추진결과 내용 및 성과 등 전반적 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.
-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,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. 협의결과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.

○ 공정보고

-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검토 사항, 각종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1회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기타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■ 성과품 제출

| 구 분 | 제 출 시 기 | 수량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착수 보고서 |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| 1부 | PPT |
| 운영매뉴얼 | 홍보관 운영 10일 전 | 1부 | PPT |
| 결과 보고서 | 과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| 1부 | PPT |
| 준공 개발 자료 일체 | 과업 준공 시 | 1식 | USB |

■ 과업 수행의 일반조건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,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하며, 최종보고서 및 용역 성과품을 계약 만료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.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와 합의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발주처는 투입 인력이 과업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과업의 대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가 기준에 따르며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대하여 제반 관계 법령이 규정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. 이로 인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.
-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과업 수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과업 수행자가 제출하는 성과물 등에 대한 사용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- 과업 수행자의 과업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목적 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.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·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■ 과업 수행의 일반조건

-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,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,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.
-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‘보안업무규정’에 따라야 하며,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한다.
-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.

■ 기타 사항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, 제반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의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.
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, 발주처의 계약해지에 따라야 하며,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없다.
-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, 감독원은 용역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에 따른 계약금액은 과업수행기간을 감안하여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.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,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, 조치할 수 있다.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
 -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될 때
 -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 -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

■ 저작권 관련 사항

- 본 계약으로 인해 산출된 결과물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처로 귀속시켜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수행자는 제작물 배포방식의 범위를 고려하여 무료서체를 사용하거나, 사용되는 서체의 저작권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.
- 제작물에 사용되는 이미지, 글꼴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여 성과품 자료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.
-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범 및 도용 등으로 인해 발주처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기타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
-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산출물을 변형·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. /끝/